

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 공고

진경여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「진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」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제안이유

가. 관련: 민주시민교육과-5184(2022.3.23.)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

나.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

2.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

현행	개정안
제18조(자문사항)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자문</u> 한다. 13.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<u>자문</u> 요청한 사항 ②제1항 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<u>자문</u> 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수렴하여 <u>자문</u> 하여야 한다. ③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<u>자문</u> 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 제21조(의안의 제출.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<u>자문</u> 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제24조(서류제출 요구)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<u>자문</u> 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제25조(생략) 2.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<u>자문</u> 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. 제26조(생략)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<u>자문</u> 한다. 제7장 자문사항의 시행 제27조(시행 의무 등)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<u>자문</u> 을 거쳐 시행한다. 제28조(생략) ③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<u>자문</u> 사항이 설립자의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<u>자문</u> 에 대하여 재론을 요구할 수 있다.	제18조(심의사항) ① --- <u>심의</u> --- 13. ----- <u>심의</u> ----- ② ----- <u>심의</u> ----- ③ ----- <u>심의</u> ----- 제21조(의안의 제출.발의) ----- <u>심의</u> ----- 제24조(서류제출 요구) ----- <u>심의</u> ----- 제25조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심의</u> ----- 제26조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심의</u> --- 제7장 <u>심의사항의 시행</u> 제27조(시행 의무 등) ----- <u>심의</u> ----- 제28조(현행과 같음) ③----- <u>심의</u> ----- ----- <u>심의</u> -----

2022년 3월 28일

진경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

